

## 자주하는 질문

### Q1. 어떤 경우에 전세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?

전세계약기간 종료 후 1개월까지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, 계약기간 중 경매 등이 진행되어 배당금으로 전세보증금을 전부 돌려받지 못하였을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.

### Q2. 청구하면 보증금을 바로 돌려주나요?

임차권등기명령 후 보증금을 청구하시면 심사 및 지급까지 약 10일 내외가 소요됩니다. (약관 상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)

### Q3. 임대인에게 불이익은 없나요?

임차인이 보증에 가입하더라도 가입 사실이 등기부에 기재되거나 공시되지 않습니다. 또한, 임차인에게 반환할 전세금이 부족한 경우 공사가 먼저 반환하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수 있어 임대인의 전세금 반환 걱정도 덜 수 있습니다.

\* 전세금 상환 유예 : 최대 6개월(유예기간 연5% 이자 부담, 중도상환 수수료 없음)

### Q4. 전세계약이 일찍 끝나면 보증료는 환불해 주나요?

보증기간 종료 전에 임대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아 보증책임이 소멸한 경우에는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보증료를 돌려드립니다.

## 가입처

- ▣ 주택도시보증공사 전국지사
- ▣ 위탁은행 우리, 신한, 국민, 하나, 기업,  
광주, 농협, 부산, 경남
- ▣ 전국위탁 공인중개사 사무소 (홈페이지 참조)

## 문의처

- ▣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 <http://www.khug.or.kr>
- ▣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-9009



## HUG를 믿으세요

### 전세금을 지키려면? 이사 걱정을 안하려면?

임대인 동의 없이도 가입 가능!

## 전세보증금 반환보증

전세계약 종료 후 임대인(집주인)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 
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



[www.khug.or.kr](http://www.khug.or.kr)

# 전세보증금 반환보증

## ❶ 상품내용

전세계약 종료 후 임대인(집주인)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입니다.

- 임차인용은 임대인이 개인인 경우로서 가장 일반적인 전세형태입니다.
  - 임대인의 동의가 없어도 보증가입이 가능합니다.
- \* 보증가입 완료 이후 임대인에게 보증가입 및 전세금채권 양도 사실 통지 (보증가입 효력과는 무관)

## ❷ 상품구조



## ❸ 보증료

보증료 산정식

$$\text{보증료} = \text{보증금액} \times \text{보증료율} \times \text{보증일수} / 365$$

보증료율

- 1) 개인 임차인\*: 연 0.128%(아파트) / 연 0.154%(비아파트)
  - 2) 법인 임차인: 연 0.205%(아파트) / 연 0.222%(비아파트)
- \* 「주택임대차보호법」 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임차인 및 전세권을 설정한 법인의 경우에는 개인임차인 요율 적용

## ❹ 보증대상 주택

단독, 다가구, 연립, 다세대, 주거용 오피스텔, 아파트

## ❺ 보증채권자(보증신청인)

임대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임차인(개인, 법인, 외국인, 재외동포)

## ❻ 보증신청기한

신규전세계약

- 전세계약서상 전세계약기간의 2분의 1이 경과하기 전  
갱신전세계약

- 갱신 전 전세계약기간 만료일 이전 1개월 이내부터  
갱신 전세계약기간의 2분의 1이 경과하기 전

\* 미분양관리지역내 거주 임차인은 전세계약기간 만료 6개월 전

## ❼ 보증금액

보증한도 이내에서 보증신청인이 신청한 금액

## ❽ 보증기간

보증서발급일로부터 전세계약기간의 만료일 후 1개월

## ❾ 가입요건

전세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

전세보증금 수도권 7억원 이하, 그 외 지역 5억원 이하

공인중개사가 확인(날인)한 전세계약

선순위채권 ≤ 주택가격의 60%

\* 단독·다가구의 경우 80% 단, 보증신청인보다 우선하는 전세보증금을 제외한 선순위채권은 60%이하

[선순위채권+전세보증금] ≤ 주택가격의 100%